

수원지방법원 2022. 10. 4 선고 2021나343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배, 노아라, 이지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8. 30.

판 결 선 고 2022. 10. 4.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1. 18. 선고 2020가소1499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인 (주)C 드림평촌지점의 지점장이고, 피고는 2018. 5. 8.부터 2020. 6. 9.까지 위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한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8. 5. 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하고, 원고로부터 지원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주)C 드림평촌지점에서 일천만원을 받고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100%를 반납할 것을 약속한다.

※ 매달 50만원은 꼭 할 것. 출근 9:30 준수

※ (매달 50만원) 이 사항 미달성시 계약기간 3년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매달 50만원 이상의 매출 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해 3년의 계약기간의 적용을 받음에도 3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지급받은 지원금 1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계약기간에 관한 약정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월 50만원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 중 ‘(매달 50만원) 이 사항 미달성시 계약기간 3년으로 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는 기재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후 피고가 임의로 추가하여 변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서 중 일부 내용의 변조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그 문서의 변조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변조 주장을 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 밝혀야 하는바(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4674 판결 참조), 이 사건 확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특약에 관한 기재가 원고에 의하여 변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건의 성취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특약으로 정한 계약조건인 “월 50만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약 중 “월 50만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내용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약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정지조건이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참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갑 제2호증(업적리스트)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5. 11.부터 2019. 8. 29.까지 15개월 19일 동안 피고의 매출실적은 합계 17,700,264원이고, 이는 2년 동안 월 50만원의 매출조건을 달성한 경우의 매출실적인 12,000,000원(= 500,000원 × 24개월)을 훨씬 상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매출실적에서 계약기간이 1년인 자동차보험에 관한 실적과 본인을 보험계약자로 한 보험에 관한 실적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업계의 관행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월 50만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피고가 2018. 5. 8.부터 2020. 6. 9.까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으로, 피고가 계약기간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재광, 판사 이명선, 판사 이나경